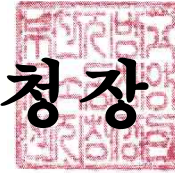


## 고용보험 과태료 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위반 사업장에 과태료 납부고지서(의견진술서 포함)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, 수취인불명,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,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6. 9.

###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



1. 건 명 : 과태료 납부 고지서(의견진술서 포함)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
2. 근 거 :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,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(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)
4. 공고기간 : 2026. 6. 9. ~ 2026. 6. 23.(15일간)
5. 진술청취 안내 :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지역협력과(3층)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6.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지역협력과 신현호(Tel 055-370-091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